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

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86
----------	-----

2021.4.30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- 라. 상정일자 : 2021년 4월 23일
(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신형근)

- 가. 제안이유
 - 2021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①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: 2,250백만원(도 990 / 시군 1,260)

- 출연 목적
 -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지원

⇨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

○ 출연 내역 : 재단 자본금(기본재산) 확충 출연금 1식

※ 세부내용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

○ 기대 효과

-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으로 보증 잔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여력 유지
-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
-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우경수)

① 충북신용보증재단

○ ‘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’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¹⁾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○ 출연규모는 총 22억 5천만원으로 2016년 30억(도 12, 시군18) 출연 이후 첫 출연금이며, 2020년 까지 총 568억원(도329, 시군239)이 출연되었음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〈 도시군 기본재산 출연금 〉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(점유비)	'15까지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국 비	286	16.5%	286	-	-	-	-	24
도 비	329	19.0%	317	12	-	-	-	-
시 군 비	239	13.8%	221	18	-	-	-	-
금융회사	876	50.7%	515	52	46	64	65	134
계	1,730	100.0%	1,315	82	46	64	65	158

○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지원이 이루어 졌으며,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 심화 및 폐업 속출, 경기회복 장기 소요 등으로 향후 대위변제(손실) 발생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이에 따라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법정 보증한도²⁾ 초과가 예상되는 바,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,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〈 '20년도 보증공급 및 신규보증 지원실적 〉

(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총공급 (신규보증 + 기한연장)			신 규 보 증			
	목 표	실 적	달성률	목 표	실 적	달성률	'19년도 대비
건 수	22,700	36,252	159.7%	12,200	24,322	199.4%	2.2배 ↑
금 액	5,000	8,526	170.5%	2,900	6,146	211.9%	2.4배 ↑

2)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19조*(보증의 한도) :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 이내 운용
 ※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: 잔여자본금 10배 수준

○ 다만,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경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, 이번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보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,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·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

□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강성환	음창규	오숙영	220-3252

기관명	충북신용보증재단								
출자·출연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(이사장) : 김교선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(가경동) - 규모 : 1본부, 4부 5지점 1센터 - 기관성격 : 출자·출연기관 - 주요사업 : 기본재산의 관리, 신용보증, 신용조사, 구상권 행사 등 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<u>2,250백만원(도비 990, 시군비 1,260)</u>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백만원)</p>								
	구분	사업기간	2020년 예산액 (출연액)	2021년 요구액	재원별				
	합계		0	2,250	3,000	750	990	1,260	0
	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	2021		2,250	3,000	750	990	1,260	0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 등 손실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 예상 ○ '19년부터 자본금(기본재산) 잠식 및 '23년 이후부터는 적정 운용 배수(10배)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 ○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자본금 확충 필요 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 제1항 제1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○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제1항 제1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악화로 2020년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2~3배 증가로 손실누적 심화 예상 ○ 적정 운용 배수 내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 4. 관련 법령 								

□ 관리 ·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경영평가

- 2019년('18성과)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선정(나등급) 선정
※ '20년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지원 추진을 위해 평가 제외

○ 감사 : 충북도 감사(2017), 중소벤처기업부(2016)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매칭(국비 : 지방비 매칭 1:3) 계획이며,
-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 등 집중 지원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안정적 보증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

③ 출연금 검토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세 출	15,000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
국비(25%)	750	750				
도비(33%)	5,790	990	1,200	1,200	1,200	1,200
시군비(42%)	8,460	1,260	1,800	1,800	1,800	1,800

충북신용보증재단

설립근거	법률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(법률 제6022호)				전화번호 : 043-249-5700		
					홈페이지 : www.cbsinbo.or.kr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9.03.26.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허가 - '99.05.10. 업무개시 - '00.03.01. 조합 → 재단 전환 (지역신용보증재단법) - '01.02.05. 본점이전 (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) - '02.05.09. 충주지점 개점 - '07.03.12. 남부지점 개점 - '09.12.02. 제천지점 개점 - '17.11.13. 혁신도시지점 개점 - '19.12.02. 동청주지점 개점 			기관 형태	출연		
인원현황	계('21.04.05.현원기준)		정규직		비정규직		
	68명		67명		1명		
입원 ('21.04.05.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김○○	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		2021.01.01. ~ 2022.12.31.		
	당연직이사(비상임)	신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2021.01.01. ~ 직만료시		
	당연직이사(비상임)	윤○○	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		2019.12.21. ~ 직만료시		
	이사(비상임)	김○○	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		2019.07.01. ~ 2022.06.30.		
	이사(비상임)	김○○	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		2020.05.26. ~ 2023.05.25.		
	감사(비상임)	신○○	정진회계법인 회계사		2018.06.11. ~ 2021.06.10.		
주요기능	-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(擔保力)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(小企業)·소상공인(小商工人)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						
자 본 금 (단위:백만원)		163,320 (2020. 12. 31.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총 173,000 (도비 '16년까지 / 32,900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9	2020	2021	재무현황 (백만원) '20.12.31	자산	189,154
	예산액	37,109	44,145	50,067		부채	25,834
	지자체 지원액	-	-	-	기준	자본	163,320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20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손실
	12,973				20,609		7,636

□ 출자 ·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2021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2,25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
※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: 잔여자본금 10배 수준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2021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
- 기간 : 2021
- 출연액 : 2,250백만원(1회 추정)
※ 도비 990백만원, 시·군비 1,260백만원
- 주요내용 :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금융채무 보증

□ 산출기초

-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·시군 분담 비율
- 총3,000백만원 : 국비 750(25%), 도비 990(33%), 시·군 1,260(42%)

【 연도별 도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억원)

구분	계	'99(설립)	'10년까지	'11	'12	'13	'14	'15	'16
출연금	329	100	147	9	11	15	17	18	12

□ 기대효과

-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
-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손실액 미충원 시 지속적인 기본재산 감소로 운용 배수 증가
- 운용배수 법정한도(15배 이내) 근접 시 신용보증 정책의 제한적 운용 불가피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>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- 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2.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
 3. 기업의 출연금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- 제19조(보증의 한도)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(결손보전)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·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□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

-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
 2. 정부의 출연금
 3. 금융기관의 출연금
 4. 기업의 출연금
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6. 보증료등의 기타수입
- 제10조(행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,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 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 등 손실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 예상
- '19년부터 잔여 자본금이 잠식되고, '23년 이후부터 적정운용 배수초과 예상되므로 자본금 확충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수요 지속대응 여건 마련

3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기간 : 총 150억, 연 30억원 × 5년간('21년 ~ '25년)
-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·군 분담금
 - '21 : 총 30억 / 국비 7.5(25%), 도비 9.9(33%), 시·군비 12.6(42%)
※ 2021년 국비 25% 매칭 지원 예정으로 보조금 반영
 - '22 ~ '25(4년간) 총 120억 / 도비 48(40%), 시군비 72(60%)
※ 향후 국비 지원시 변경 반영

4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세 출	15,000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
국비(25%)	750	750				
도비(33%)	5,790	990	1,200	1,200	1,200	1,200
시군비(42%)	8,460	1,260	1,800	1,800	1,800	1,800